

## 우체국 Young利한 통장 특약

### 제1조 【적용범위】

‘우체국 Young利(영리)한 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우체국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우체국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조 【예금종류】

이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 제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신규 가입일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35세 이하의 실명의 개인이다. (1인 1계좌)

### 제4조 【가입 및 해지】

이 예금의 가입 및 해지는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등을 통하여 한다.

### 제5조 【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다.

### 제6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으나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으로 가입 시 1원 이상으로 한다.

### 제7조 【적용이율】

- ① 이 예금의 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 등에 게시된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 ②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 제8조 【이자계산】

- ① 정기이자계산 기준일(결산일)은 매년 3, 6, 9월 셋째 토요일이며 12월은 말일로 한다.

- ② 이자 계산기간(결산기간)은 최초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또는 지급일 부터 차기 지급일 전일까지)로 하고 이자계산은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해당 이율로 셈한다.

### 제9조 【이자지급방식】

이 예금의 이자는 정기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지급일)에 통장으로 입금된다.

### 제10조 【우대서비스】

- ① 이 예금은 아래 기본조건에서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기본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
  1. 휴대폰 요금 등 각종 공과금, 적금 등 계좌 간 자동이체 약정 · 유지
  2. 전자금융 정기예금 또는 적금의 모계좌로 지정 · 유지
  3.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우체국 Young利한 체크카드』 1회 이상 이용  
※ 단, 대학생은 재학증명서 제출 시 “우체국 금융수수료 면제” 기준에 따라 기본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우체국의 다양한 금융 수수료 면제
  4. 기본 우대서비스 내용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인터넷·폰·모바일뱅킹 타행 즉시이체 수수료 면제
자동화기기 수수료 면제	우체국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영업시간 외 현금인출, 영업시간 내·외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 ② 이 예금은 아래 추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
  1.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우체국 Young利한 체크카드』 10만원 이상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
  2. 추가 우대서비스 내용

타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면제 (월 5회)	타 금융기관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영업시간 내·외 현금인출 수수료 ※ 타 금융기관의 범위 : 시중은행,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CD 공동망 참여 금융회사 (단, 편의점, 대형마트, 지하철역 등 은행 외 부장소에 설치된 자동화기기 제외)
-------------------------------	--

- ③ 이 예금의 우대서비스는 신규 가입일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조건 충족 여부 관계없이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
- ④ 우대서비스는 고객 연령 만 35세까지 적용한다. 단, 가입시부터 만 35세까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2년간 적용한다.
- ⑤ 이 예금의 우대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 게시한다.

**제11조 【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로 가입 가능하다.

**제12조 【기타】**

- ① 이 예금은 계좌대월 약정, 전자통장 약정, 상계가 가능하다.
- ② 이 예금은 양도, 담보제공이 불가하다.

**부 칙**

- ① 이 특약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